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『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』

檢討報告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0. 5. 11.

社會建設委員會 專門委員

『유니세프 이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』

檢討報告書

1. 경 과

의안 제200호로 2020년 2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·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규약 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
 - 1) 개정 명칭 :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
- 나.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 삽입 (안 제1조)
 - 1) '지방자치법 제152조' 문구 삽입
- 다.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 수정 (안 제4조)
 - 1)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 운영

- 라.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마련(안 제12조)
 - 1)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화
- 2) 자문단 구성 및 운영,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,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 등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마. 협의회 부담금 회장 지자체 세입·세출 예산 편성 근거 마련(안 제13조)
 - 1)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 세입조치 근거 조항 마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건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유엔아동 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립·운영 중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「지방자치법」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.
- 협의회 규약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규약 상 지방정부협의회의 명칭을 변경하였고, 안 제12조에서는 협의회 운영 경비의 사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, 안 제13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을 회장 자치단체 예산에 편입하여 지방자치 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음.

○ 따라서, 협의회 규약 개정안은 협의회 회원도시 확대에 따라 협의회 명칭과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협의회 부담금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본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법

- 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- 제158조(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 용한다.